

1. 법률명	항공안전법의 신원조사에 관한 기본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
2. 제·개정 일자	2020.03.05
3. 발의자	연방 정부
4. 시행일자	공포 후 즉시 시행
5. 소관 상임위	내무위원회 (Ausschuss für Inneres und Heimat)
6. 제·개정 배경	<p>- 현재 항공 안전 기관들이 항공기 테러의 가장 큰 위협인 내부 직원(내부 직원은 공항 보안구역 출입 가능)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보안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보안정보를 항공 안전기관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</p> <p>* 9.11 테러이후 항공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1월 15일 독일 항공안전법 제정</p>
7. 주요 내용	<p>- 항공 안전 기관들에게 지상직원 및 항공기승무원 등 내부 직원들의 전반적인 신뢰도 평가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됨.</p> <p>- 전국적인 차원의 항공안전기록부 설치 예정 (Zudem soll ein gemeinsames, bundesweites Luftsicherheitsregister eingerichtet werden)</p>
8. 자료 출처	<p>- https://www.airliners.de/bundesregierung-sicherheitsueberpruefung-luftfahrtpersonal/53325</p> <p>- https://www.behörden-spiegel.de/2020/02/25/weitere-register-sollen-einbezogen-werden/</p> <p>- http://dip21.bundestag.de/dip21/btd/19/164/1916428.pdf</p>
보고자: 주성훈 독일주재관 (2020. 3. 10)	